

행 정 자 치 부

통 보

제 목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조례 미제정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횡성군

내 용
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, 가로수를 옮겨심기, 가로수의 제거,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 경우 승인절차, 승인기간,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.

또한, 제2항에 따르면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,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.

위와 같이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등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가로수를 심는 단계부터 관리 단계까지 지방특성에 맞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가로수 정책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.

그러나 횡성군을 제외한 다른 시·군은 아래 [표]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과 같이 조례를 제정·운영하고 있으나, 횡성군은 가로수관련 조례를 미 제정·운영하고 있다.

[표]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

조례명	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(15)	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·관리 조례(2)	조례 미제정(1)
시·군	강릉시, 고성군, 삼척시, 속초시 양구군, 양양군, 영월군, 인제군 정선군, 철원군, 춘천시, 태백시 평창군, 홍천군, 화천군	원주시, 동해시	횡성군

조치할 사항 횡성군수는
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따라 가로수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가로수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